

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(그린내) 민간위탁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|
| 의안 번호 | 75 |
|----------|----|

제출년월일 : 2018년 8월 1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(그린내)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,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써,
- 나.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(장애인복지정책과 수탁자선정심의회위원회), 2차(조직담당관 민간위탁평가위원회)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,
- 다. 현 수탁법인이 장애인 관련 전문성과 시설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등 안정적 시설 운영을 도모하였기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(그린내) 관리·운영
- 나. 시설개요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2길 14
 - 개관일자 : 2011. 05. 11.
 - 시설규모 : 부지 4,831㎡, 건물 1,124.54㎡(지상 2층)
 - 작업실, 사무실, 재활상담실, 자원봉사자실 등
 - 시설기능 : 직업교육·훈련 등 직업재활서비스 제공(화장지 생산·판매)
 - 운영법인 : 사회복지법인 서울삼성원

다. 주요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5년(2017.11.16. ~ 2022.11.15.)
- 수탁자 선정방법 : 재계약
- 위탁유형 : 예산지원형(시설형 위탁)
- 소요예산 : 727,016천원(2018년)

라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 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 - 장애인복지법 제58조(장애인복지시설)
 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(정의) 및 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및 제12조(재계약)
-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 -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(그린내)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(보호고용, 작업활동 등)를 주요기능으로 하는 시설로,
 - 화장지 생산 및 판매 등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기술, 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민간 운영이 관보다 유리하고
 - 사회복지사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기에,
 -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제공을 위해 장애인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○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2. 위탁계약기간
-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○ 장애인복지법 제58조(장애인복지시설)

-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3. 장애인직업재활시설 :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·치료·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,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

○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(정의)

-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"사회복지시설"이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서 설치하는 노인·장애인·여성·아동복지 관련 시설,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.

○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
-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(재계약)

-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,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임종수(☎ 2133-7468)